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724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학교법인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구합53071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2. 15.
판 결 선 고	2018. 1. 2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5. 7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45,895,140원, 지방교육세 121,809,580원(각 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7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2면 하단 2행의 "를 호텔용도로 사용하였다."를 "을 호텔용도로 사용하였다."로 고친다.

○ 7면 하단 7행을 "표시하였으며, 게스트룸 임대료수입에 관한 계정별원장(을 제5호증)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'게스트룸 임대료'라고 기재한 뒤, 세부적요란에도 '현금매출' 또는 '신용카드 매출'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감면부분을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취지로"로 고친다.

○ 8면 1행 내지 2행을 "이고 내부 자료인 계정별원장에 호텔수익을 '임대료'로, 세부적요를 '현금매출, 신용카드 매출' 등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용도 외 사용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또는 누락된 기재라 볼만한 증거도 없다."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7

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필곤

판사 신숙희

판사 이승철